

불법복제



저작권 보호, 문화 사랑의 시작입니다.
소중한 **창작물, 정품 저작물** 이용!

저작물 불법 복제

지식재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.
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
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
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
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·폐기 및 삭제 업무를 진행합니다.

신고 전화 1588-0190